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 용 료

1) 이용료 : 요양 급여 총액 중 15% 본인부담 금액 + 비 급여 금액(기초 수급자는 본인부담 및 비 급여 금액 납부 제외; 무료)

* 요양보험 수가(2026년도 월20일 기준, 단위: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 야 간 보 호	3시간 이상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 월 한도액(단위: 원)

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비 급여 내역(단위: 원)

구 분	급식비(1끼)	간식
일 한도액	4,000	1,000

-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표준약관)를 참조한다.

* 이용자 자격별 급여 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또는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정지환자(희망년초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아·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 ①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② 아·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아·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세부기준
 -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